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737 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사유

○ 시 인구의 대량 유입,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등으로 인해 법무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고문변호사를 6인에서 8인으로 증원(안 제2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「하남시 법제사무 처리규정」에 맞도록 정비(안 제1조, 제2조)
-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5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 없음
- 6. 예산수반 사항: 7,200천원
 - 고문료 및 자문수당 (30만원*12월) = 3,600,000원/년
- 7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 없음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법무담당관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하남시고문변호사(이하 "고문변호사"라 한다)"를 "하남시고문변호사"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6인 이하의 고문변호사"를 **"8인 이하의 고문변호사(이하 "고문변호사"라 한다)"**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서 명		기획예산담당관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담당관 정 택 용
	팀장 직위·성명	의회법무팀장 박 상 규
	담당자 성명·전화	노성주 (790-5615)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하남시고문변호사</u> (이하 "고문변호사"라 한다)에 관하여 필	제1조(목적) <u>하남시고문변호사</u> -
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 시장은 개업중인 변	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
호사중에서 <u>6인 이하의 고문변호사</u> 를 위	8인 이하의 고문변호사(이하 "
촉할 수 있다.	고문변호사"라 한다)
②・③ (생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